

2024년 법인세 신고 대비 필수 검토 사항

SAMIL*i*.com

세무사 이은자

이은자 세무사

이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
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
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
서울상공회의소, 한국생산성본부 등 세법전문강사
삼성전자, 태영건설, 해성그룹 외 다수 강의

목 차

- I. 2023 개정세법
- II. 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- III.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확인(1)
- IV.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확인(2)
- V.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확인(3)

Ch.01

제 1회차 강의

2023 주요 개정세법

I. 2023 개정세법

1. 법인세 세율인하

과세표준	세율(종전)	세율(개정)
2억원 이하	10%	9%
200억원 이하	20%	19%
3,000억원 이하	22%	21%
3,000억원 초과	25%	24%

※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I . 2023 개정세법

2.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

- 일반법인, 연결법인, 합병·분할법인, 외국법인 :

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% 한도

=> 80% 한도

※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I . 2023 개정세법

3.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

- 「상법」 제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
 - >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

※ 2023.1.1.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I. 2023 개정세법

4.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- 기업형태(지주회사/일반회사, 상장/비상장법인)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차등 적용
- >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제도 합리화

지분율	익금불산입율
50% 이상	100%
20% 이상 50% 미만	80%
20% 미만	30%

※ 2023.1.1.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I . 2023 개정세법

5.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

- 공급자가 면세 재화 ·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
- 거래건당 5만원 이상,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

※ 2023.7.1. 이후 재화 ·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I. 2023 개정세법

6.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

(국기령 제1조의2 ①)

- 6촌 이내 혈족 -> 4촌 이내 혈족
- 4촌 이내 인척 -> 3촌 이내 인척
- 혼외 출생자의 생부·생모[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](신설)

※ 2023.3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Ch.02

제 2회차 강의

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
Ⅱ. 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
1.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장부 반영 확인

- 매출 : 수입금액 제외 내역 확인
- 매입 : 고정자산, 일반매입 구분

Ⅱ. 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
2. 원천세 신고내용과 인건비 계상 일치 여부 확인

- 급여, 퇴직금, 용역료(사업소득, 기타소득) 계상액과 원천세 신고내역 일치 여부
- 장부에 미지급 배당금 계정 잔액 -> 배당소득 지급 시기 의제, 원천세 신고 여부 검토
-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사항 -> 당기 회계처리 반영

Ⅱ. 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
3. 당기순이익 / 당기순손실

- 이익이 예상되는 지 / 손실이 예상되는 지
- 이익 또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
 - ① 유형, 무형자산의 감가상각
 - ② 즉시상각의제
 - ③ 대손충당금의 설정
 - ④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의 대손처리
 - ⑤ 자산의 평가이익 / 평가손실

II. 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
4. 자산 / 부채 기말잔액 검토

- 자산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
(예 : 취득세 납부 -> 세금과공과에 계상)
- 금융기관 대출금 확인
- 보험료 불입액 :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
- 선수금 / 선급금 계정 확인
- 가지급금 / 가수금 계정 확인

Ⅱ. 재무제표 마감 전 검토사항

5. 자본 검토

- 주주변동 여부 확인 :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
- 주주변동에 따른 적절한 세금신고 이행 여부
- 자본금의 변동 여부 확인 : 증자, 감자
- 배당 검토
 - ①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
(법인세법 제18조 제8호,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)
 - ②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
 - ③ 현금배당 / 주식배당

Ch.03

제 3회차 강의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(1)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1. 과세소득의 계산

	결산서상 당기순이익	회계이익
+	익금산입 · 손금불산입	세무조정
-	손금산입 · 익금불산입	
=	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세법상 과세소득

▷ 세무조정

- 결산조정 : 장부에 반영해야만 세법상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(감가상각비, 충당금 등)
- 신고조정 :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, 익금산입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1) 감가상각 요소

구 분	회 계	세 법
상각대상금액 (취득원가-잔존가액)	취득가액+부대비용 합리적으로 추정	취득가액+부대비용 0
내용연수	합리적으로 추정	법정
상각방법	수익-비용대응에 가 장 적절한 방법	법정
내용연수, 상각방법 변경	가능	법정사유의 경우 지방청장 또는 세무 서장 승인필요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2)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

자산구분	신고 시 상각방법	무신고시 상각방법
건물, 구축물	정액법	정액법
유형자산	정액법, 정률법, 광업->생산량비례법	정률법 광업->생산량비례법
업무용승용차	정액법	정액법
무형자산	정액법	정액법
광업권	정액법, 생산량비례 법	생산량비례법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3) 세법상 내용연수

- [별표2]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

- ① 시험연구용 건물부속설비, 구축물, 기계장치 : 5년
- ② 광학기기, 시험기기, 측정기기, 공구 등 : 3년

- [별표3] 무형자산의 내용연수

- ① 영업권, 상표권 등 : 5년
- ② 특허권 : 7년
- ③ 광업권 등 : 20년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3) 세법상 내용연수

- [별표5]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

- ① 차량및운반구, 공구, 기구, 비품 : 5년 (4년~6년)
- ② 선박및 항공기 : 12년(9년~15년)
- ③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 등 건물과 구축물 : 20년
- ④ 철골, 철근콘크리트조 등 건물과 구축물 : 40년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3) 세법상 내용연수

- [별표6]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
업종마다 고유하게 보유하는 기계장치, 시설장치 등
업종마다 기준 내용연수를 4년, 6년, 8년 등

- 기준내용연수, 내용연수 범위

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4) 즉시상각의제

- 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**100만원 이하인** 감가상각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
- **다음의 자산**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
어구, 영화필름, 공구, 가구, 전기기구, 비품, 측정기기 및 간판, 전화기(휴대용 전화기 포함), 컴퓨터

Ⅲ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유형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

(5) 감가상각의제

-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

① (차) 감가상각비 (대) 감가상각누계액

또는

② (손금산입) 당기 감가상각비 △유보

Ch.04

제 4회차 강의

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(2)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대손상각 · 대손충당금

(1) 대손상각

사업상 발생한 매출채권, 대여금, 선급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때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

① 신고조정 사유

- 소멸시효 완성,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
- 사유발생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, 세무조정 누락한 경우 해당연도 법인세 경정청구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대손상각 · 대손충당금

(1) 대손상각

- 소멸시효 중단 : 경과한 기간은 무효,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시 진행(중단사유 : 청구, 압류, 승인)
- **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-19의2-9**
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**접대비 또는 기부금**(손금불산입, 기타사외유출)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대손상각 · 대손충당금

(1) 대손상각

② 결산조정 사유

-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-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, 어음상의 채권,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(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)
-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(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은 제외)
- 사유발생시 결산에 반영하면 손금인정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대손상각 · 대손충당금

(1) 대손상각

② 결산조정 사유

- **기준법령해석 법인2020-209, 2020.10.21.**

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2. 대손상각 · 대손충당금

(2) 대손충당금

- 회수가 불확실한 정도를 당기 비용으로 인식
- $\text{Max}(1\%, \text{대손실정율})$
- $\text{대손실정율} = \text{당기 대손금} / \text{직전연도 기말 채권잔액}$
- 충당금설정 대상 채권
외상매출금, 받을어음, 미수금, 대여금(특수관계자 가
지급금은 제외) 등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3. 가지급금 인정이자

-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한 유형
- 특수관계인에게 무상·저리로 금전을 대여
 - > 시가와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5% 이상
- 시가 : 가중평균차입이자율, 당좌대월이자율(4.6%)
- 특수관계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권은
특수관계 소멸할 때 익금산입(상여 등 처분)
 - ▷ 대표이사 사임(해임), 폐업 등

I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3.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
자 산	부 채
업무무관 부동산	
가지급금	차입금(대출금)
	자 본

-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,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(기타사외유출 처분)

Ch.05

제 5회차 강의

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(3)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4. 자산의 평가

(1)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

보유목적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계상
기말에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 평가이익·평가손실 계상

=> **세법은 취득원가만 인정**

익금불산입·손금불산입 조정

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반대 조정으로 사후관리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4. 자산의 평가

(2) 재고자산

- 기말 재고자산 = 수량 X 단가
- **재고자산 감모손실** :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불일치
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에 계상
예) 파손, 도난, 부패 등
- 세법은 실제 감모 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 확보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4. 자산의 평가

(2) 재고자산

- 기말재고의 단가 : 저가법 또는 원가법 중 선택
- 저가법 : 취득원가와 기말 시가 중 적은 금액
- 원가법 : FIFO, LIFO, 총평균법, 이동평균법, 개별법
-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**저가법으로 선택**한 경우
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 가능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4. 자산의 평가

(2) 재고자산

-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

- ① 신설법인 :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
- ② 평가방법 변경 : 변경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
- ③ 평가방법 무신고 시 적용방법
유가증권 : 총평균법, 매매목적 부동산 : 개별법
그 외 자산 : **선입선출법**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4. 자산의 평가

(3) 손금 인정되는 평가손실

- ① 재고자산 : 파손·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
- ② 유형자산 :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
- ③ 주식 등 : 주식발행법인의 부도, 파산, 회생계획인가 결정,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5. 퇴직연금

(1) 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)

- ①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이 확정
- ② 기금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
- ③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 불입
- ④ 회사의 불입액을 손금으로 인정
- ⑤ 불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식, 세무조정 없음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5. 퇴직연금

(2) 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)

- ① 사전에 급여수준과 내용을 약정
- ② 적립금은 회사의 책임으로 운용, 이자율변동,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회사부담의 변동 가능
- ③ 퇴직급여 예상액의 80% 이상 불입
- ④ 퇴직연금 납입액 범위 내에서 손금인정
(퇴직급여추계액 한도)
- ⑤ 불입시점에 자산 계상, 손금산입 조정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6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

(1) 업무용승용차

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
=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

(2) 업무전용 보험가입

(3)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(2024년 이후)

(4) 차량운행기록 작성, 보관

※ 업무용사용거리 : 사업장 방문, 출장, 회의참석,
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주행

V. 주요 세무조정 사항의 확인

6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

- (5)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은 경우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,500만원 인정
(감가상각비 포함)
- (6)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
 - 내용연수 5년, 정액법 상각 강제
 - 연 800만원만 손금 인정
 - 처분손실도 연 800만원만 인정

이상으로

2024년 법인세 신고 대비 필수 검토 사항
강의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